

2. 주요내용

가. 정수기 용출 안전성 확보(안 제7조제5항 신설)

정수기에 유입수를 24시간 동안 채워 물과 접촉하는 모든 부품의 용출여부 확인토록함

나. 정기검사 제도 도입(현행 제13조제4항 개정)

정수기 품질검사 합격제품에 대해 합격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함

다. 「정수기 품질검사 정보망」 운영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정기검사 제도 도입에 따라 품질검사 합격제품 현황(모델명, 합격일, 사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품질검사기관은 시스템 구축·운영

라. 시험수 조제시 원수 조건 신설(현행 별표1 2호라목 개정)

시험수 조제시 원수의 온도, pH 등의 변화가 시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수 조건(pH, 탁도, 수온, 잔류염소, 경도)을 규정

마. 시험수 조제물질(중금속류, 경도) 변경 (현행 별표1 2호라목 개정)

중금속류 등은 시험수 조제물질의 수용성이 낮아 염산, 질산 등을 사용해야 하며, 이로 인해 필터의 손상발생 우려가 있어 금속물질 대신 물에 잘 녹는 이온성 화합물을 시험수 조제시 사용($Cd \rightarrow Cd(NO_3)_2 \cdot 4H_2O$, $Cu \rightarrow Cu(NO_3)_2 \cdot 3H_2O$, $Mn \rightarrow Mn(NO_3)_2 \cdot 6H_2O$ 등)

바. 정수기 성능표시 방법을 의미별로 분류하여 표기 (현행 별표2 3호 개정)

정수기 성능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정수성능이 있는 물질들을 의미별(심미적 영향물질, 미생물, 소독부산물질 등)로 그룹화하여 표시

사. 유효정수량 시험 합리화(현행 별표1 3호다목 개정)

시험항목을 클로로포름외 탁도를 추가하고, 추정 유효정수량의 25%부터 25%간격으로 통수시켜 클로로포름제거율이 기준(80%이상) 만족시 인정하므로써 시험 비용 및 기간을 절감

아. 필터 생산시 사용할 수 있는 활성탄 입자크기 제한 폐지(별표1 5호 삭제)

고성능 필터 제작시 제한 요소로 작용되어온 활성탄 입자크기 제한($500 \sim 2,380 \mu m$)을 폐지하되, 모든 정수기에 대해 용출안전성 시험시 '탁도' 항목을 검사하도록 하여, 정수과정 중 활성탄 입자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3. 참고사항

동 고시는 2016년 2월 29일 고시하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함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를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6-5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1호나목,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

1. 덮개 재질 및 형태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재질이란 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된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을 말한다.

나. 덮개의 형태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로 한다.

2. 덮개 구조의 기준

- 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을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재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보조틀로 사용할 수 없음)
- 나.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하고, 금속 재질의 덮개 또는 덮개의 프레임은 적재함 옆면의 상부에 상시 고정되어 있어야 하되, 폐기물 상·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다. 수집·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34조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기인증 또는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인증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활용품 수집·운반자동차의 적재함 구조의 기준

- 가.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재활용품(대형폐기물 포함) 수집·운반차량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중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덤프 기능은 경·소형 및 중형 수집·운반차량에 한하여 허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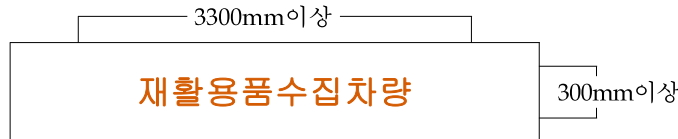
<적재물별 비중>

적재물품	비중	적재물품	비중
재활용품	0.200	대형폐기물	0.240
재활용품(압축형 차량)	0.300		

- 나. 적재함에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다.

- 1) 전면: 전면 판넬 중간 부위
- 2) 측면: 적재함 좌·우 측면 앞쪽 하단부

<측면 설치 기준>



※ 글자체(굴림체), 개별 글자 크기(가로·세로 각각 150mm이상), 개별 글자 간격(60mm이상), 단어 간격(90mm이상), 전체글자크기(가로×세로 : 1500mm×1500mm이상), 노란색 또는 호박색 글씨로 표시. 다만, 최대적재량이 2.5톤 이하인 경우는 상기 기준 3분의2로 조정 가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6-82호

“다공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및 분절형 다공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교의 제작 및 시공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